

##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가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7. 2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도서관 및 문고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대전광역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 내지 제11조).

나.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5조).

### 3. 참고사항

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##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모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 학습·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문고”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법 제10조 제2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서관 및 문고의발전 기본시책
2.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
3. 기타 도서관 시책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밭도서관장이 되며,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서관·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문화계장이 된다.

제10조(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및 여비)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참 고 사 항

( 관 련 법 규 )

## □ 도서관및독서진흥법

제10조(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)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.

②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,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

## □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

제15조(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등) ①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특별시·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대표관장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대표관의 장(지방대표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)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당해 지역의 교육·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·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

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
2.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기타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